

# 大韓民國憲法改正案

## 提案理由

우리는 1948年7月17日 大韓民國政府 樹立의 기초가 된 憲法을 制定·公布한 이래 8차에 걸친 憲法改正을 경험하였다.

이제 제 12대國會의 與·野議員은 지난 39年間 겪은 귀중한 憲政史的 教訓을 거울삼고 우리 國民의 創意와 勤勉으로 이룩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꾸준히 變化·成熟되어 온 民主力量과 다양화된 民意를 폭넓게 受容하여 大韓民國 憲政史의 새로운 章을 여는 合意改憲案을 제안함으로써 전체 國民의 同意와 자발적 參與를 바탕으로 自由民主主義 理念과 體制를 더욱 확고히 繼承·發展시키고 祖國의 平和統一基盤을 鞏固히 하여 세계 속에 雄飛하는 2千年代의 새 歷史 創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제 12대總選이후 改憲問題를 둘러싸고 갈등과 對立 그리고 混亂을 거듭해온 우리 社會는 國民大和合的 차원에서 일대 전환을 試圖한 6.29宣言으로 극적인 收拾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與·野 合意에 의한 憲法改正案이 제안될 수 있게 되었다.

이 憲法改正案은 與·野 政黨間에 合意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國會內의 모든 政黨代表가 參與한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만장일치로 起草·成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國民的 合意를 導出하는데 필요한 모든 節次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民主化時代의 展開를 향한 國民的 興望과 政治人의 時代的 使命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번 憲法改正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大統領直選制의 채택으로 國民의 直接選舉에 의한 政府選擇을 보장함과 아울러 大統領單任制에 기한 平和的 政權交替의 傳統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民主國家發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둘째 拘束適否審査請求權의 전면보장, 刑事補償制度의 확대, 犯罪被害者에 대한 國家救助制 新設등 國民의 身體와 生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言論·出版·集會·結社에 대한 許可·檢閱의 금지등 表現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며, 勞動3權의 실질적 보장과 最低賃金制의 실시등 勤勞者의 生存權을 확충하여 基本的人權을 대폭 伸張하였다.

셋째 大統領의 非常措置權·國會解散權의 폐지를 통하여 大統領의 權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國家權力의 均衡과 調和를 도모하였다.

넷째 國政監査權을 부활하는등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의 權限을 강화하고 그 機能을 활성화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補完하였다.

다섯째 法官의 任命節次 개선과 憲法裁判所의 新設등을 통하여 司法權의 獨立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憲法의

實效性を 提高하였다.

여섯째 自由經濟體制의 原理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所得의 分配, 地域經濟의 균형발전, 中小企業과 農漁民 보호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의 福利를 증진시키고 國民生活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를 실현하도록 하였다.